

<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>

제1조 (계약목적)

센터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.
- ② 센터와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.
-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(또는 보호자) 양측에 재계약 포기(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,계약서에 '계약기간 자동 연장'에 대한 항목이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,노인복지법 제34조,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이용료 등 비용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 (계약준수사항)

-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(또는 보호자)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.
- ② 계약체결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,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,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(또는 보호자)와 사전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을 제공한다. 단 계약서에는 기간,급여의 종류,급여비용,비급여,개인정보보호,분쟁해결,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.

제 4조 (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)

-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 - 2.이용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
 - 3.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시 즉각 변경된
연락처를 제공할 의무
 - 4.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(해외이주,금치산 또는
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)
 - 5.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
이를 제공할 의무
-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 - 2.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
확인할 권리
 - 3.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 - 4.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 - 5.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제 5조 (신원인수인의 변경)

-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
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
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(보호자)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
요구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(보호자)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
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.

제 6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)

- ①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
요양급여비용 중 15%(본인부담액)을 부담한다.
다만,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%를
부담한다.
-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소득,재산이 일정금액
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규정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줄
수 있다.
- ③ 이용료 수납은 매월 초 센터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정한다.
- ④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환급할 수있다.

- 1.센터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 수납후 이용 불가 승인통보를 하였을 경우.
- 2.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,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는 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
- ⑤ 이용비용 기준: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르며,등급변경과 매년 요양 보험수가의 변경은 재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.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이용자 또는 국기법 수급권자의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한다.

***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6.01.01)**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7,450	150분 이상	50,640
60분 이상	25,320	180분 이상	57,020
90분 이상	34,120	210분 이상	63,530
120분 이상	43,430	240분 이상	70,080

○ 등급별 추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9.0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.0%

제 7조 (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)

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,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① 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갑”이라 칭함)의 의무

- 1.이용자(이하 “을”이라 칭함)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
- 2.“을”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3.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4.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,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
5. 기타 “을”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② 이용자(보호자)의 의무

- 1.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2.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
- 3.표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
- 4.기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

③ 보호자(이하 “병”이라 칭함)의 의무

- 1.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
- 2.이용자의 월 이용료 비용부담 의무
- 3.인적 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4.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제 8조 (계약의 해제)

계약 종결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-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.
-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.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.
- ④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.
- ⑤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.